



동아특수화학(주)

## 선물 처리 지침

승인자	총무 이한경 차장
제정	2025년 12월 19일
개정	최초 제정
문서 관리 번호	DGP-0303
문서 관리자	총무 이한경 차장



## 1. 목 적

이 지침은 협력회사, 임직원 및 모든 이해관계자와의 투명한 관계를 통한 상생협력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하여 임직원이 금품 및 선물을 수령하였을 경우 취해야 하는 행동을 제시한다.

## 2. 지 침

가. 임직원은 협력회사를 비롯하여 업무와 관련된 이해관계자(직원 포함)가 제공하는 선물 및 금품을 절대 받아서는 안되며,

나. 회사 또는 자택으로 선물이나 금품이 전달되는 경우에는 회사의 윤리경영 의지를 표명하고 정중히 거절해야 한다.

다. 불가피하게 받은 선물의 처리

- 원칙적으로 선물을 절대 받아서는 안되지만 어쩔 수 없이 받게 된 경우에는 팀장에게 보고
- 보고 받은 팀장은 공개적이고 투명한 절차에 의해 물품의 내용에 따라 "자유재량 처리", "윤리경영팀 신고" 등 적절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조치
- 임원의 경우도 직접 반송 혹은 윤리경영팀에 신고

## 3. 선물처리 절차

가. 어쩔 수 없이 선물을 받은 경우, 받은 선물이 a, b, c 인 경우라면 가능한 빨리 되돌려 보낸다. 반송 시 선물을 반송하게 된 사유 및 성의에 대한 감사의 뜻과 향후에는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당부하는 서신을 동봉한다.

### [어쩔 수 없이 받게 되는 선물 예시]

- a. 자리에 없을 때 방문해 선물을 놓고 간 경우
- b. 택배로 선물이 배달된 경우
- c. 받지 않겠다는데 무작정 맡겨 놓고 가버린 경우
- d. 의전적, 외교적, 문화적 이유로 받지 않는 것이 오히려 결례인 경우

나. 되돌려주려고 해도 여러 이유로 반환할 수 없을 경우, 되돌려주지 못한 선물은 팀장에게 물품과 함께 신고한다.



**[돌려보내기 곤란한 사례 예시]**

- a. 누가 보낸 것인지 불명확한 경우
- b. 보낸 분이 누구지는 알지만 정확한 소재지와 연락처를 모르는 경우
- c. 돌려보낼 물품이 식품이나 생물이어서 유효기간이 매우 짧은 경우
- d. 의전적, 외교적 이유 때문에 되돌려주는 것이 오히려 결례인 경우

다. 팀장은 보고와 함께 받은 물품을 투명하고 정당한 방법으로 재량껏 처리한다. 팀장 차원에서 자유재량으로 처리하기 곤란한 물품은 신고서(금품수수 신고서)와 함께 윤리경영팀으로 보낸다.

- 보고 받은 선물은 우선 물품의 가격/성격/내용/의미 등을 꼼꼼히 따져 보고 "자유재량껏 처리할 것인가", "윤리경영팀에 신고할 것인가"를 판단
- 자유재량으로 처리하는 경우 물품의 가격/성격/내용/의미 등을 잘 고려해 적절한 방법으로 처리

**4. 팀장의 선물처리 방법**

가. 보고 받은 선물은 "자유재량 처리", "윤리경영팀에 신고" 중 처리방법을 판단한다. 처리방법의 판단 역시 팀장 스스로 결정해야 하지만, 판단이 곤란할 때는 윤리경영팀과 협의한다.

**[신고 권장품목 예시]**

- a. 통상적 수준을 넘는 고가의 품목
- b. 외국회사와의 교류로 받은 회사 차원에서 가치 있는 물품
- c. 직접 이해관계자가 뇌물 성격으로 보낸 불순한 동기의 물품
- d. 선행에 대한 답례 성격으로 받은 홍보의 가치가 있는 물품
- e. 유력한 인사, 기관, 기구 등에서 받은 의미 있는 물품
- f. 기타 품목으로서 윤리경영팀에 신고할 필요성이 있는 물품

나. 자유재량에 의한 처리시 물품의 가격/성격/내용 등을 잘 고려해 아래와 같이 처리한다.

- 자유재량에 의한 처리방법에는 사외단체에 기탁, 팀 내에서의 사용, 직원간 나눠 갖기, 폐기, 팀 내 영구보관, 팀 내 전시 등 가능
- 통상적 수준 이내의 물품이라도 이해관계자로부터 받은 물품은 팀 내 사용은 지양(팀 내에서 사용하는 것은 결국 이해관계에 궁극적으로 영향을 미침)



- 한편, 회사 외부에 기탁 시 오히려 회사 이미지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술, 사치품 같은 물품은 사외 기탁방법을 지양

**[자유재량 처리방법 예시]**

- 우선 권장방법은 고아원/양로원 등 사회시설, 자매마을/지역사회 봉사단체/독거노인 등 따뜻한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곳에 전달하는 방법
- 직접적 이해관계자가 아닌 자매마을 등에서 받은 농산물과 같은 물품은 관련 직원들의 활용이 가능함
- 물품 중 식품이나 생물처럼 유통기간이 짧아 변질의 가능성이 있는 것은 빠른 시간 안에 처리하고 변질의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폐기함
- 국내외 타사와의 업무교류 시 주고받은 선물 중 통상적 수준을 넘어서는 물품(예; 고급만년필, 양주, 포도주)은 역사적 가치가 있어 팀 내에 비치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윤리경영팀에 신고 처리

**5. 윤리경영팀의 선물처리 방법**

가. 윤리경영팀에 접수된 물품은 가격/성격/내용/의미 등을 고려하여 분류하고 회사차원의 대표자 명의로 사회복지기관(고아원/양로원 등), 자매마을/지역사회 봉사단체 등에 기탁한다. (인재경영팀, 주니어보드, 수평선회 등과 상의)

나. 기탁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기 곤란한 물품은 별도방법으로 처리한다.

다. 처리 후 신고 팀에 처리결과를 통보한다.

**6. 시행일**

이 지침은 2025년 12월 19일부로 시행한다.

2025. 12. 19

동아특수화학주식회사 대표이사 전병철

